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0. . .<br>(제 회) |      |

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장관) |
| 제출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5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각 동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082호, 2018. 8. 7. 공포, 8. 10. 시행)되었으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같이 부지 안에 도로가 없고,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용구역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음.

이에 따라 인접한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유도하여 입주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전용구역은 유효한 공지(空地)에 설치하도록 명시(안 제7조의13제1항)

- 1) 전용구역을 소방자동차의 배치나 소방활동 지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기능하지 못하는 위치에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사례 발생
- 2) 전용구역을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는 유효한 공지에 설치하도록 하여 실질적 기능 확보  
나. 대지(垞地)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은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추가(안 제7조의1 3제2항)

1)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와 직접 접한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전용구역 노면표지는 운전자가 그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안 별표 2의5)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서울특별시(주택공급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0.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3제1항 본문 중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을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효한 공지(空地)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되,”로,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을 “후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垞地)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한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의5의 제목 중 “(제7조의13제2항 관련)”을 “(제7조의13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5 비고 제1호 중 “표시한다.”를 “표시할 것”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도료”를 “도료(塗料)”로, “표시한다.”를 “표시하고, 운전자에게 그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할 것”으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 <p>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① -----<br/>-----<br/>-----<br/><u>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공지(空地)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u><br/><u>- 후면에 -----.</u> -----<br/>-----<br/>-----<br/>-----<br/>-----.</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垜地)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u>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한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u></p> |

② (생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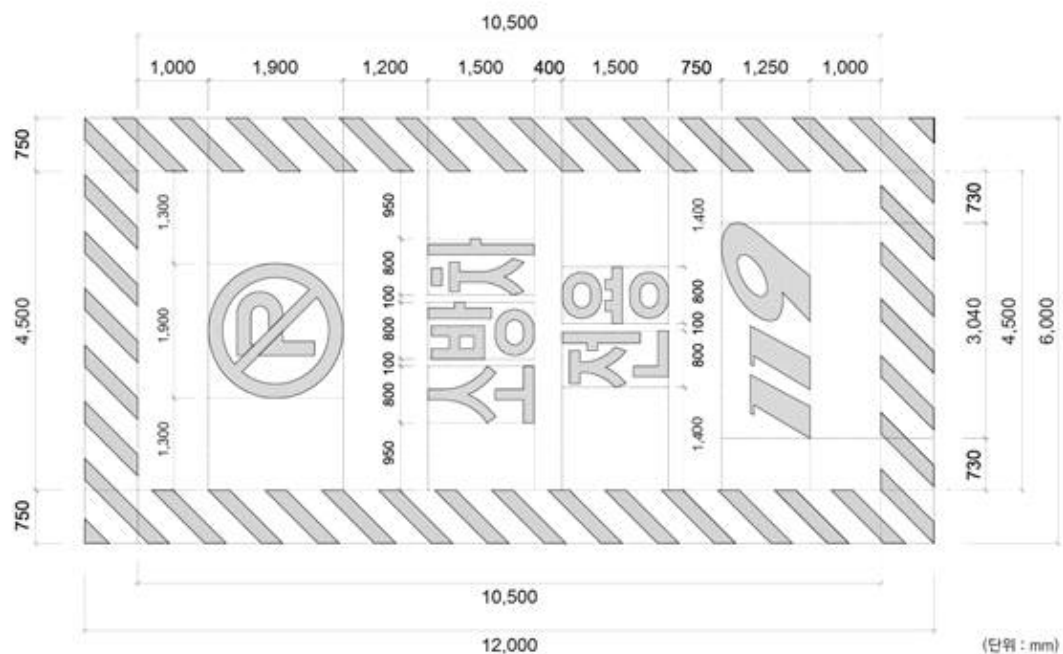
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5] <신설 2018. 8. 7.>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제7조의13제3항 관련)



비고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할 것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塗料)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하고, 운전자에게 그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할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
| 연 락 처       | (044) 205 - 7471 |